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98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허성무 · 김동아 · 김문수
최형두 · 장철민 · 이언주
황정아 · 박민규 · 김교홍
윤영석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발전이 전력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나, 기존의 원자력발전 방식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초기 투자비용, 건설의 장기화, 안전성 우려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 · 영국 ·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세계 원전시장은 소형원자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라.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등 특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 바. 소형원자로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 지원,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 19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아. 소형원자로기업과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8조).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형원자로 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말한다.
2. “소형원자로”란 모듈당 발전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시스템”이란 소형원자로와 결합 또는 연계하는 부대 시설로서 원격지 전력 공급, 난방용 열 공급,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소형원자로시스템”이란 소형원자로와 활용시스템을 말한다.
 5. “소형원자로기업”이란 소형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실증·운영·해체 등의 업무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 물품 및 기술 용역 제공 업무를 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소형원자로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소형원자로시스템을 활용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형원자로수출”이란 소형원자로시스템,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기자재 등의 물품,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와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란 소형원자로수출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경쟁력 유지·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의

지원(이하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실증·상용화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또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소형원자로기업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상용화 및 수출에 필요한 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내외 인허가의 적기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②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소형원자로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외 마케팅 및 국제협력 활동 등을 통하여 소형원자로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현지화 전략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형원자로기업 및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소형원자로시스템을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형원자로기업 및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설계·건설·운영·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순환 경제 원칙을 고려한 설계 및 운영 방안을 개발·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형원자로기업과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2.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추진전략과 이행방안
3.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소형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실태 및 전망
5.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6.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7.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8. 그 밖에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진흥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 이행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진흥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금융 및 국제협력 분야 등의 제도개선, 관계 법령의 제·개정,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 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소형원자로시스템 지원위원회) ①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소형원자로시스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인허가등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기반조성

제10조(기술이전·사업화 등 지원) ①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안정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료 및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급망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2. 공급망 안정화 관련 품목의 선정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4.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안정적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료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 설치·운영 등 산업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2. 미래 소형원자로시스템 유망분야의 우수 전문인력 양성
3.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4. 소형원자로기업 퇴직 인력의 재취업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의 공급 활성화

5.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및 활용 촉진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설·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기

업이나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소형원자로기업이나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소형원자로기업이나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게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확산 지원

제14조(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 등) ①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보급·확산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자재 등의 국산화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실증을 위한 원자로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부지가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선정 절차 등 실증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정 지역을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구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익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⑤ 특구 내 소형원자로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특구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구의 관리

2. 특구 활성화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3. 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4. 특구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 간 상호 연계 활동 촉진
5. 특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대외협력·홍보
6. 그 밖에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형원자로시스템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을 활용한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소형원자로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탄소중립 달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

가격이 책정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소형원자로시스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소형원자로시스템의 활용 촉진)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소형원자로시스템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소 생산 등에 활용
2. 소형원자로시스템에서 발생한 열이나 증기를 산업현장 등에 활용
3. 그 밖에 소형원자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2. 제14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
3. 제15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4. 제19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안정적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생태계 구축, 미래 소형원자로시스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 지원

제19조(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 공동연구·공동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소형원자로수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컨설팅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형원자로수출의 촉진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해외 수주 지원
 2. 금융지원 등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축
 3. 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대상국과 관련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4. 그 밖에 소형원자로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허가등 신속처리 특례) ①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협의·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소형원자로수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3. 그 밖에 소형원자로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허가등 신속처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소형원자로수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 등

제2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형원자로시스

템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원자로부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부터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될 때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강제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소형원자로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25조에 따른 부담금
 3.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원자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7. 기금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지원
 2. 제11조에 따른 안정적 공급망 구축
 3.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제13조에 따른 금융 지원
 5.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
 6. 제15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의 지원
 7. 제17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활용
 8. 제19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국제협력 지원
 9. 제20조에 따른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의 컨설팅 지원
 10.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④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협회의 설립) ① 소형원자로기업과 소형원자로수출사업자는 소형원자로시스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협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고·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6항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 지원센터, 제20조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소형원자로시스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소형원자로시스템의 진흥 특구 지원센터의 임직원
3. 제20조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임직원
4.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